





▣ 첨부서류

서 류 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온라인 (전산)	오프라인 (직접)			
① 견적서(원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	○	○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건설업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	○	○	○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	×	○	○
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	×	×	○
⑤ 대출예정확인서	×	×	×	×	○
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	×	×	○	×
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	×	×	○	×
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	○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 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	×	×	○	×	×

주)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



발급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료 <b>완납 증명원</b>		
발급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건설공사명]		
소재지	[소재지]		
보험가입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관리번호]-6 [사업자등록번호]-7
보험성립일	고용	[고용일]	보험소멸일
	산재	[산재일]	
사업의종류	고용	[고용종류]	산재
	산재	기타건설공사	
사업개시번호	사업개시일	사업개시(공사)명	
[사업개시번호]-7	[사업개시일]	[사업개시(공사)명]	
징수유예 내역	금액	[금액]	
	유예기간	-	
용도	발주처제출용	제출기관	기타
관린 증명원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명] [인인] [인인] <b>근로복지공단</b> [인명]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이 증명원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의 수납여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b>근로복지공단</b> [인명]			

##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 [예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2221	발급일시	2021-01-29 13:48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명칭						
<b>■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b> <span style="float: right;">1 / 1</span>						
연번	구분(세구분) 등록번호	성명	주거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2						
3						
이외의 비						
<p>※ 위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특정종)으로 신청·발급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공합니다.</p> <p>- (특정종)은 4대 사회보험의 의무적합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정보으로, 세사중립성, 정책중립성, 대상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급 기일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p> <p>- 이 자료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공단 차시 청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동시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용이전제) 국민연금 (15%, 건강보험 (177~1,000, 산재 고용보험 (568-8075))</p> <p>-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국가 기업내에선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산재보험의 경우, 국제취득일 및 근로자 고용일을 위하여, 신청일 및 발령일 등 '적전이고 사업장'인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취득(국외취득)일' 필기하지 않습니다.</p> <p>※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국민연금 이 시		국민건강보험 이 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고용보험 전주지사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동시에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발급 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용이전제) 국민연금 (15%, 건강보험 (177~1,000, 산재 고용보험 (568-8075))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기업내에선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제5조제5항 관련)

1. 우리 공단의 융자금 지원 대상자 결정통보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지원신청(사업주→공단) →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대출약정(사업주↔은행) →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투자확인서」 발급(공단) → 융자금 지원요청(사업주→은행) → 융자금 지원(은행) → 사후기술지도(공단)

2.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도별 융자금 재원 및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자 서명

(서명)

4. 우리 공단에 융자금 지원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융자금을 지원받기 이전이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양도,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확인자 서명

(서명)

7. 사업주는 융자금 지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융자금 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취소·상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 및 일정기간 동안 지원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청 제한기간 5년)
  -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③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④ 융자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⑤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⑥ 융자금 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예시】

작업공정	작업내용 및 위험정보	작업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실행 방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재료 입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작업내용</b> - 인력 또는 운반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하는 작업</li> <li>▶ <b>근로자수</b> : 2명(정규직1,일용직1)</li> <li>▶ <b>과거 3년간 재해자수</b> : 없음</li> <li>▶ <b>사용설비 및 기계기구</b> - 지게차(1대) - 이동식 대차(1대)</li> <li>▶ <b>사용 유해물질</b> :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운행 중 급회전에 따른 전도재해 위험이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성(12) = 빈도(3) × 강도(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운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후 위험성(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전 단</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작업내용</b> - 전단기를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전단하는 작업</li> <li>▶ <b>근로자수</b> : 2명(정규직 1, 일용직 1)</li> <li>▶ <b>과거 3년간 재해자수</b> : 2건 - '18년 1건 : 전단기에 손가락 협착 - '19년 1건 : 철판 모서리에 손가락 베임</li> <li>▶ <b>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b> - 전단기(1대) -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li> <li>▶ <b>사용 유해물질</b> :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를 이용한 전단 작업시 작업자 손가락 협착 위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성(9) = 빈도(3) × 강도(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판 운반작업시 작업자 손 보호장구 미착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성(9) = 빈도(3) × 강도(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호장치가 완비된 신규 미착식 클러치 프레스 교체(2대) 설치 <b>【음자 신청설비】</b></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후 위험성(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판의 날카로운 부위로부터 작업자의 손이 보호될 수 있는 손 보호장구 지급·착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후 위험성(6)</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제4조제1항 관련)

##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소재지:

## 2. 대출예정 현황

- 필요금액:
- 대출가능 금액:
- 보증확인: 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기타(해당사항 ○표시)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을 위하여 상기 사업장은 당 은행에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부)장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00본부(지사)장 귀하

※ 설비투자완료 후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사업장이 설비대금 지급곤란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사업장의 신용도,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출거래 예정이 가능할 경우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 견적서 1부

### ■ (양산품) 투자설비 타사 실거래실적

☞ 매매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동일 모델 2건 이상

☞ 투자설비 공급업체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공단에 제출

※ 양산품 : 사출성형기, CNC 선반, 지게차, 프레스 등 공사품 이외 품목

### ■ 안전인증서, S마크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해당 시 제출

###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사용·설치 사진(예시)

□ 사업장명 : **주안정보권**



※ 건물 전경, 회사명이 나오게 촬영

사업장 외부 전경



※ 지원물품 설치 위치 촬영

장비 설치 장소(지게차)